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2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환희,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은림,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7명)

1. 제안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호사목 중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장을 말한다.</p> <p>2.·3. (생략)</p> <p>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p> <p>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p> <p>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공원관리청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p>	<p>제2조(정의) ----- ----- -----.</p> <p>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p> <p>2.·3. (현행과 같음)</p> <p>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p> <p>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p> <p>제9조(점용허가대상 공원)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p>

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1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4. 제1호-----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조(점용허가대상 녹지) ----

-----.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
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
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
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생략)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
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 바.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5조-----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자. (생략)

3. (생략)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사.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

아. 자.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

2. ~ 4. (생략)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생략)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 10. (생략)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 14.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부장관-----

--

7. (현행과 같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 10. (현행과 같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30명 이상의 단체

3. (생략)

③ · ④ (생략)

2. 30명 이상----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3081700000004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춘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08.17.

회신일 : 2023.08.18.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및 정의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